##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36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백혜련·이병진·김준혁

이기헌・김한규・정동영

오세희 • 문진석 • 김태년

김기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악취관리지역 내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중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배출시설의 신고에는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전 악취방지 조치 외에도 가동 이후 악취관리를 위한 해당 시설의 운영 방식이 중요한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설의 가동 전 필요 조치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신고대상시설 중 그 규모가 크거나 연속적으로 악취를 배출하는 등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가

동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들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의무 규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악취방지 및 악취관리 강화에 기여하여,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4신설).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8조의4(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운영) ①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8조의3제4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 나 악취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악취물질 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2. 악취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 는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악취가 새 나가는 악취배출시설이나 악 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4. 악취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5. 그 밖에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

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 하는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4(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
	지시설의 운영) ① 신고대상시
	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악취방
	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8조의
	3제4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u>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u>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
	다)는 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
	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1.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
	<u>니하거나 악취 정도를 낮추기</u>
	위하여 악취배출시설에서 나
	오는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악취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
	하고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배출관 등을 설치
	하는 행위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악
	취가 새 나가는 악취배출시설

- 이나 악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 4. 악취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
  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
  위
- 5. 그 밖에 악취배출시설이나 악취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 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